간이세율(제96조 관련)

품 명	세율(%)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개별소비세가	
과세되는 물품	
가. 투전기, 오락용 사행기구 그 밖의 오락용품	47
나. 보석·진주·별갑·산호·호박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	721,200원 +
품, 귀금속 제품	4,808,000원
	을 초과하는
	금액의 45
다. 고급 시계, 고급 가방	288,450원 +
	1,923,000원
	을 초과하는
	금액의 45
라. 삭제 <2017. 3. 27.>	
2. 삭제 <2019. 2. 12.>	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기본관세율이	
10 퍼센트 이상인 것으로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	
물품	
가. 모피의류, 모피의류의 부속품 그 밖의 모피제품	19
나. 가죽제 또는 콤포지션레더제의 의류와 그 부속품, 방직용	18
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, 신발류	
다. 녹용	21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. 다만, 고급모피	15
와 그 제품, 고급융단, 고급가구, 승용자동차, 수렵용 총포류,	
주류 및 담배는 제외한다.	